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목 차

I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II 장애인차별금지법 1 : 건강권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2 : 정보통신·의사소통

IV 권리구제 절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정목적 및 의의

- 1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2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3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 차별금지의 제정배경 01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보장 요구 등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례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은 미비한 상태임

인권차원에서 이해하고 진정한 사회통합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
차별금지의
제정배경
02

장애는 개인의 병력에 따른 개개인의 문제

개인적
(재활)
모델

장애의 개념이 개인적(재활)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함

사회적
모델

장애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으로 보아야 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 4조 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표시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사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 5조 차별판단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에 따른 차별로 봅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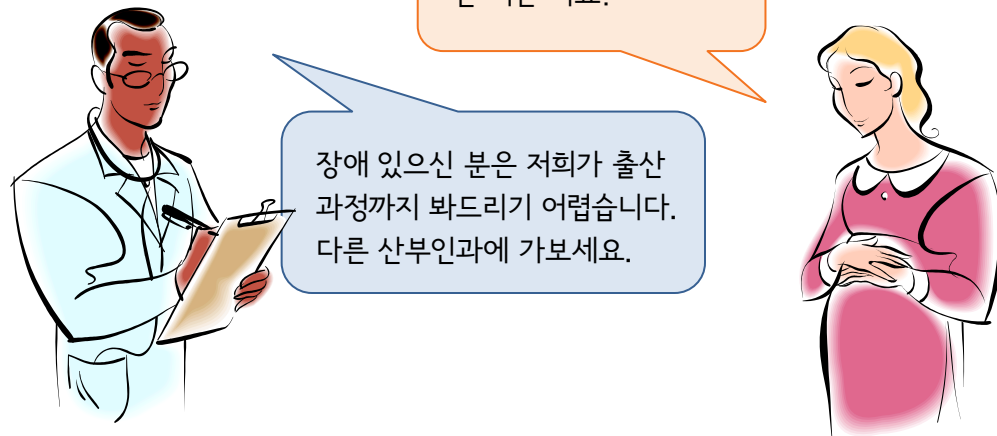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 6조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 7조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1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치료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 7조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2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
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유형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

이러나서
걸어보세요

못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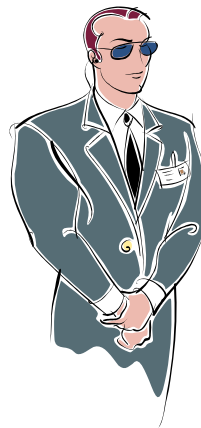
“아래,
발이도 못하니까
신입자를 뽑을때
몸상태를 잘체크하라.
유지하라.”

신입 면접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 거부를 말합니다.



안내견은 출입금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

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차별금지 대상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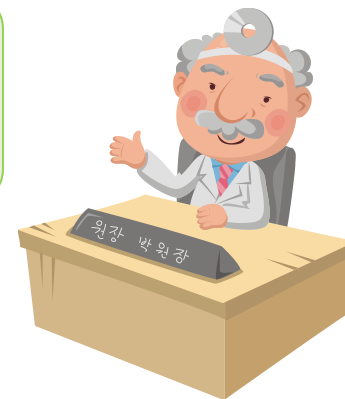
2. 장애인차별금지법: 건강권

건강권 _차별상담사례 1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다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그러나 진료 받을 때 담당의사의 기분이 좋으면 A 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만일 담당의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A 씨에게 “너 왜 왔어? 어디가 또 아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A 씨는 의사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병원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



너 또 어디가 아픈 거야?
왜 왔어?



건강권 _차별상담사례 2

신장장애 2급인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한쪽 손에 이상이 왔다. 이에 B 씨는 바로 항의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미 장애가 있으므로 우리 쪽 책임이 아니다.”는 말과 함께 진단서 발급 및 사후 치료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런 태도에 화가 난 B 씨는 직접 원장실을 찾아갔으나, 직원들이 B 씨에게 폭언과 함께 억지로 끌고 나가서 바닥에 내팽겨치고, 문도 닫아버렸다.



의료사고는 당신 장애 때문이지,
우리 병원 측 잘못이 아니에요!



건강권 _차별상담사례 3

C 씨의 부모는 C 씨의 미간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얼른 병원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C 씨의 지체,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였다.
결국 C 씨의 부모는 몇 시간을 더 헤매고 나서야 겨우 한 병원에서
C 씨를 치료할 수 있었다. C 씨의 부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상담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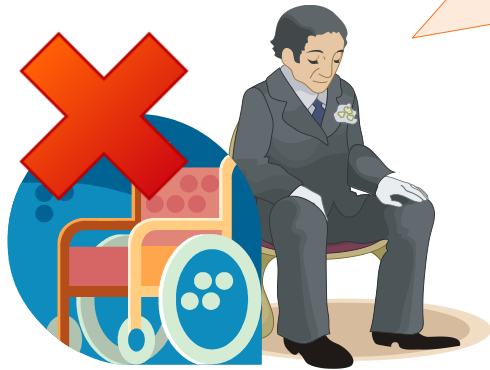


장애인은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지 마세요!



건강권 _차별상담사례 4

D 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혼자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얼마 전 친척 분이 입원하셔서 D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문안을 갔다. 그러나 병원까지 모셔오는 것은 무리가 없었지만,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빌리려고 했으나, “우리 병원 환자가 아니면 휠체어를 대여해 줄 수 없다.”며 거부 당하였고, 아버지는 결국 친척 분 병문안을 할 수 없었다.



장애가 있어도 우리 병원
환자가 아니면 휠체어를
대여해줄 수 없습니다



건강권

제 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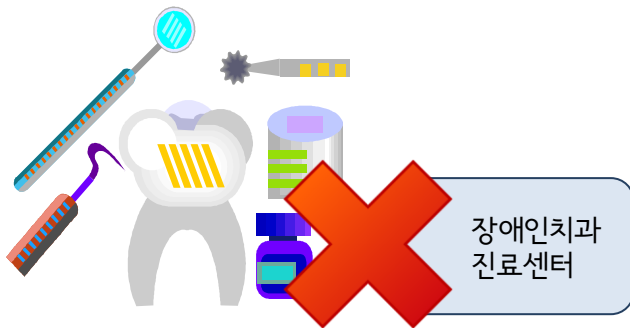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 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통신, 의사소통

정보통신·의사소통_차별상담사례 1

A 병원 부설 치과 진료센터는 '장애인치과 진료센터'라는 명칭으로 A 병원 1층에서 장애인치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센터에서 장애인치과 진료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가 되자 A 병원이 있는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치과 진료센터'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A 병원에서도 환자 수가 줄어듦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치과진료센터에 압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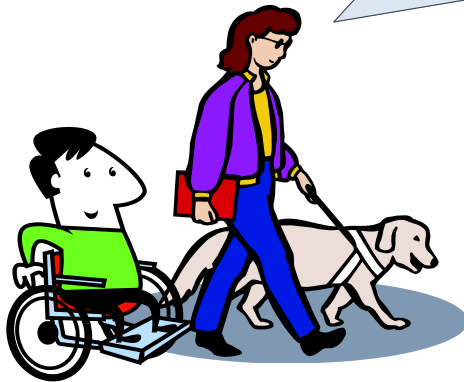
장애인들이 진료센터
알아서 찾으라고 하고,
장애인치과 진료센터 명칭
자체를 쓰지 마세요!



정보통신·의사소통_차별상담사례 2

시각장애 1급인 B 씨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자세한 약의 정보를 듣고 싶어했지만, 그 때마다 의사는 “약사한테 가져다
주면 다 알아서 주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하고 말하였다.
또한 약국에서도 “의사가 알아서 처방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자세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에 B 씨는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의료인이 처방전 낭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상담요청 했다.

우리가 알아서 처방해
줬으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정보통신·의사소통_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환자 인쇄 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상기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사본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점자자료화 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또는 점자자료, 녹음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상기 권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정보통신·의사소통

제 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대리·동행하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의 활동을 강제 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21조 정보접근·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보통신·의사소통 대상시설]

2008년 4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2009년 4월 11일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0년 4월 11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년 4월 11일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100인 이상) 영재학교·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2년 4월 11일	민간종합공연장,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년 4월 11일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교원 연수기관,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2015년 4월 11일	민간 일반공연장·영화상영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4.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권리구제의 필요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고,
현실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존 법률체계는 고액의 소송비, 법률자문 비용, 어려운 절차,
법률용어,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_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권리구제 절차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 제 46조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법 제 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및 상담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주소 _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_1331

이메일 주소

hoso@humanrights.go.kr

기관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홈페이지 주소_www.15775364.or.kr

전화번호_1577-5364

이메일 주소

human5364@daum.net

기관주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로얄프라자 8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안내

교육안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 human5364@daum.net 로 교육신청 메일 발송
2. www.15775364.or.kr 통해 교육신청



감사합니다

동 교재에 포함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상담사례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 판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